

경기동부상공회의소 제6대 의원 보궐선거 안내

□ 6대 의원 보궐선거 정원 및 임기

가. 보궐 선거 의원 정원 : 7인

나. 보궐 선거 의원 임기 : 당선일 ~ 2021. 7. 21 (*6대 의원 임기와 동일)

□ 선거권 및 피선거권 (정관)

가. 정관 제63조 2항 (*6월 27일까지 회비 미납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)

- 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1기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. 다만,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며, 의원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.

나. 의원 선거규정 제9조 1항, 2항

- 회원은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며, 회원이 가지는 선거권의 수는 별표와 같다.

다. 정관 제13조 (*회비납부 금액에 따른 차등 부여)

- 제13 조(선거권) ① 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(1개 사업연도를 2등분한 각 기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직전 2개 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회원 1인이 가지는 선거권은 25개를 초과할 수 없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까지 제15조 제5항에 따라 추가로 회비를 낸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회비 납부액에 합산한다.
③ 회원이 제15조 제4항에 따라 현 의원임기일로부터 차기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까지 낸 특별회비는 제1항에 따른 회비 납부액에 합산한다.
④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이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.

□ 6대 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

가. 등록기간 : 2019. 6. 28(금) ~ 7. 2(화) / 5일간 *토, 일 포함(오전 9시~ 오후 5시)

나. 등록서류

- 1)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
- 2) 추천장 5부 (*의원 선거권자)
- 3) 사업자등록증사본 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 1부
- 4) 인감증명서 (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 1부
- 5) 사진(반명합판) 1매

다. 회비납부 : 3년간(2016년도 하반기~2019년도 상반기) 단 1회라도 체납한 회비가 없어야 함.

(※회원가입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기간 중 체납이 없으면 됨.)

라. 체납회비 : 2019년 6월 27일(목)까지 완납하여야 함.

□ 6대 의원 보궐선거 및 당선

가. 보궐선거 정원보다 후보자 등록이 많을 경우 - 의원선거 실시 후 당선인 공고

나. 보궐선거 정원보다 후보자 등록이 적을 경우 - 무투표 당선

[별표] (제9조 제1항 관련)

회원의 선거권 수

회비금액	선거권 수	회비금액	선거권 수
50만원 이하	1	800만원 이하	13
100만원 이하	2	900만원 이하	14
150만원 이하	3	1,000만원 이하	15
200만원 이하	4	2,000만원 이하	16
250만원 이하	5	3,000만원 이하	17
300만원 이하	6	4,000만원 이하	18
350만원 이하	7	5,000만원 이하	19
400만원 이하	8	6,000만원 이하	20
450만원 이하	9	7,000만원 이하	21
500만원 이하	10	8,000만원 이하	22
600만원 이하	11	9,000만원 이하	23
700만원 이하	12	9,000만원 초과	24